

서울특별시의회
제298회 정례회
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
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제안 설명



2020. 12. 17.

서울특별시의회의원

봉 양 순

-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!
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!
더불어민주당 봉양순 의원입니다.

-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
「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
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-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예상되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노인이 되어서도
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하며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므로,

- 성년후견제도에 있어 미성년자를 친권의 공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
보호하고 친권 행사자의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,

- 본 조례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관련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추가함으로써
공공후견제도의 실질적 제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
발의하였습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
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,
본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
서울특별시 후견 활동 지원을 위하여
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-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